

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20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2. 11. 20

제출자 : 이정율 의원 외 5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2년 12월 5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심 사 계 획

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안건

-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3. 활동기간

- 2012년 12월 5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- 정문섭 의원, 이만재 의원, 유인환 의원, 박종욱 의원,
이정율혁 의원, 장문혁 의원

5. 운영계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 고
2012. 12.5 (수)	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	1.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	